

대구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138389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지은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3. 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652,7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 9. 24.부터, 피고 C, D은 각 2022. 9.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박상인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1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는 대구 서구 F에서 캠핑용품 제작 및 판매업, 캠핑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캠핑용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2 C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고, 피고3 D은 원고와의 계약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계약체결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담당했던 자로 현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갑 제1호증 사업자등록증명,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물품 공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상황

가. 계약체결 및 계약금액 등 지급

- (1)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G 스토어 'H'에서 판매할 캠핑용품의 제작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주인 피고 D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I'를 공급받는 물품

공급 계약을 2022. 5.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 체결했습니다.

<계약 1>

*계약일시 : 2022. 5. 13.

*계약 물품 : I (디자인 옵션 : J / K)

*계약금액 : 8,250,000원 (공급되는 물품의 대금을 계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물품 공급 단가 : 옵션 J - 132,000원 / 옵션 K - 165,000원

*물품 공급 방식 : 소비자가 G 스토어 'H'에서 구매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발주서를 넣고, 피고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

*납품기한 : 소비자 주문 후 5~8일(영업일)

(2)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22. 5. 13. 계약금 중 3,960,000원을 피고 회사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2022. 5. 16. 나머지 4,29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022. 5. 19.경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상품의 공급물량을 1,000만 원 더 늘리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22. 5. 19. 500만 원, 2022. 5. 21. 500만 원을 위 피고 회사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하였습니다.

(3) 2022. 5. 21.경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구공장에서 피고 D을 만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제작하지 않았던 'L'을 새롭게 제작하여 원고에게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신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물품 공급 계약서

참조). 'L'은 아직 제작된 적이 없는 제품이어서 피고 회사는 우선 샘플 상품을 제작하여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내에(2022. 5. 27.까지) 원고에게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 5. 22.부터는 <계약 1> 상품의 납품기한을 '주문일로부터 2~3일(영업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약 2>

*계약일시 : 2022. 5. 21.

*계약 물품 : L

*계약금액 : 30,000,000원 (공급되는 물품의 대금을 계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물품 공급 단가 : 232,500원

*물품 공급 방식 : 소비자가 G 스토어 'H'에서 구매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발주서를 넣고, 피고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

*납품기한 : 소비자 주문 후 일주일 내

*계약 파기시의 조치 : 어느 일방의 계약 불이행이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파기된 때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총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계약서 제4조)

(4) 원고는 <계약 2>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2022. 5. 23. 1,000만 원, 2022. 5. 24. 400만 원, 2022. 5. 28. 1,600만 원을 위 피고 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5) 2022. 6. 1.경 피고 회사가 "<계약 1>의 'K 옵션'에 대한 계약금이 전부 차

감되었다.”라고 하여 원고는 위 피고 회사의 농협 계좌로 3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1> 상품의 디자인을 변형하는 옵션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물품 대금 2,475,000원을 2022. 6. 9.경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계약 2> 상품에 옵션을 추가한 새로운 제품의 샘플 제작 비용으로 16만 원, <계약 2>에 대한 부가세 300만 원을 각 위 피고 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나.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

- (1) <계약 1> 상품에 대한 첫 주문이 2022. 5. 17.경 G 스토어 ‘H’에서 들어온 이래 2022. 5. 20.까지 8개의 주문에 대해서는, 색상 오배송으로 주문취소 및 환불처리 된 1건과 배송지연으로 고객 측에서 주문을 취소한 1건을 제외한 6건의 물품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2. 5. 22.경 배송기간을 기존 5~8일에서 2~3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이후 2022. 5. 23.부터의 주문 건에 대해서는 8일은커녕 배송에만 3~4주가 소요되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색상 오배송으로 주문취소 및 환불처리 된 주문 건수도 3건이 더 늘었습니다. 원고가 물품 발송을 독촉하면 피고 회사는 “내일 보내겠다, 현재 공장 인력 충원 중이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심지어 상품을 보내지 않았으면서 “출고했는데 택배사 측에서 집화처리가 안 됐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고 회사는 2022. 5. 31. 주문 건부터는 아예 상품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2. 6. 16.경 일방적으로 “<계약

1> 상품을 보낼 수 없으니 주문 들어온 것들 모두 취소하라.” 며 일방적으로 통고하였습니다. 결국 <계약 1> 상품에 대한 총 39개의 주문 중 겨우 12개(총 공급가액 1,617,000원)만 고객들에게 배송이 되었고, 나머지 27개 주문 중 24건은 피고 회사의 오배송 내지 미배송을 이유로 주문취소를 해야 했으며, 원고는 더 이상 위 상품에 대한 주문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 6호증 - <계약 1> 상품 주문 진행 내역 참조).

(2) <계약 2>를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는 위 상품에 대한 샘플을 2022. 5. 27. 까지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2022. 5. 28.경에 전화로 “샘플을 보냈으니 2022. 5. 31.까지는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도 샘플을 보내기는커녕 샘플 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가 확인해보니, 피고 회사와 캠핑용품 구매계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거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와 개인구매고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 회사는 공동 구매를 진행하였다가 물품공급을 하지 못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환불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직후 그 환불금을 지급한 정황도 있었습니다(갑 제8호증 인터넷 게시물 참조). 원고는 더 이상 피고 회사가 계약이행을 정상적으로 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기 거래 완료된 12건의

주문금액 1,61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 대금 지급금액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주문 건으로 인해 구입한 원단을 반품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며 환불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피고 D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제작 및 공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7.경 서울 노원경찰서장에게 피고 D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갑 제9호증의 1 접수증, 제9호증의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참조). 원고 이외에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 D에 대한 형사고소를 여러 건 접수하여 피고 D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1)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와 그에 따른 계약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① 피고 D은 원고에게 캠핑용품인 'T'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 5. 13.경 카카오톡으로 원고에게 “제품 20개의 개런티를 선지급해야 물품 공급이 가능하다, 타 업체들은 위탁을 위해 5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30개의 개런티를 선지급했다.”고 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 회사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서 기존에 취소된 계약의 환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제작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제작 및 공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22. 5. 13.경 피고 회사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185,000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원고를 기망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편취 하였습니다.

② 이처럼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이 사건 1, 2 계약체결은 피고 D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는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고 일부 물품을 출고하며 마치 원고와의 계약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피고 D의 기망행위를 고의 내지 과실로 방조하였습니다. 또는, 피고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물품공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원고에게 대구 공장을 보여주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

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 D이 이러한 피고 회사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 회사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합니다.

- ③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1, 2 계약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대금 57,185,000원 중 실제 공급한 물품대금 1,61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568,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계약 2>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도 있습니다.

(2) 피고 회사의 이행불능 내지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계약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피고 회사의 사기 내지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은 명백한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약내용 이행불능 내지 미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할 것이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행된 부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5,568,000원의 물품대금 등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계약 2>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도 있습니다.

나. 청구금액

(1) 계약금 내지 물품대금

원고는 <계약 1> 및 <계약 2>와 관련하여 총 57,185,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주문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 공급을 완료한 것은 총 12건(주문금액 1,617,000원)에 불과한바, 채무자는 이를 제외한 55,568,000원의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 1>에 관하여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비고
2022.5.13.	3,960,000	T 계약금(물품대금)
2022.5.16.	4,290,000	
2022.5.19.	5,000,000	
2022.5.21.	5,000,000	
2022.6.1.	3,300,000	
2022.6.9.	2,475,000	
합계	24,025,000	
<계약 2>에 관하여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비고
2022.5.23.	10,000,000	'L' 계약금(물품대금)
2022.5.24.	4,000,000	
2022.5.28.	16,000,000	

2022.6.9.	3,160,000	'L'의 부가가치세 300만 원 및 샘플제작 비용 16만 원
합계	33,160,000	
총 합계	57,185,000	

(2) 위약금 청구

<계약 2>를 체결할 당시 계약서 제4조에 “갑이나 을 어느 일방의 계약 불이행이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파기된 때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총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 간 물품공급 계약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내지 이행불능 등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또는 해지된 바, 피고 회사는 <계약 2>의 총 공급가액인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원고는 G 스토어 주문자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지연배송 내지 미배송 등이 발생한 때에 사과의 뜻으로 주문자에게 LED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배송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문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LED 블루

투스 스피커 가액 67,900원(9,700원 × 7명) 및 택배발송 비용 16,800원
(2,400원 × 7명)의 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갑 제11호증 참조).

4.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은 원고와의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에 등재되어 있던 자입니다.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사내이사 1인만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내이사가 대표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은 회사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사정을 숨긴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을 묵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무릇 대

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 70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회사,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5.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와 그에 따른 계약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이 사건 1, 2 계약체결은 피고 D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가 피고 D의 기망행위를 고의 내지 과실로 방조하였습니다. 또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 D이 이러한 피고 회사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 회사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합니다.

- (2) 어느 쪽이든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나. 상법 제401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 (1)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40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 직함을 쓰며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C을 대신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와의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던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 (2) 따라서 피고 회사가 기망의 주체가 되거나, 피고들 모두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고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어 물품대금 반환 등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경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계약체결을 주도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고 회사,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